

의안번호	제916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6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법률 제20038호, 2024. 1. 16. 일부 개정, 2025. 1. 17.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13조)

- 교육의 대상, 연간교육 횟수 및 시간, 교육 내용 구체화
- 교육의 방법 규정을 구체화하여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육)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

1. 교통사업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 종사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충청북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외부 교육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교육을 의뢰받은 교육기관 등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수강인 등에게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육) ① <u>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u> 는 법 제13조에 따라 <u>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u> 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u>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② <u>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u>
1.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u>	1. <u>교통사업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u>
2. <u>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 <u>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u>
3. <u>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u>	3. 「 <u>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4호에 따른 <u>택시운수종사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u>

4.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시장·군수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충청북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거나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외부 교육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교육을 의뢰받은 교육기관 등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수강인 등에게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2022. 1. 18., 2023. 9. 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

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전문개정 2012. 6. 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2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7.>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 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4. 23., 2025. 1. 1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388호, 2024. 4. 2., 일부개정]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9. 7. 2.>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